

	<h2 style="margin: 0;">교무위원회규정</h2>	규정번호	3-8-3
		제정일자	1997.03.01.
		개정일자	2023.05.01.
		개정차수	7차
		소관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교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교무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 및 구성에 관한 사항
2.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
3.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각종 시설 및 자원 계획과 관리에 관한 사항
5.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
6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, 교무처장, 입학홍보협력처장, 학생성공처장, 산학협력처장, 행정지원처장, 전략기획처장과 그 외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위촉하는 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서기) 위원회는 위원중 1인을 서기로 둔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199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1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3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3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